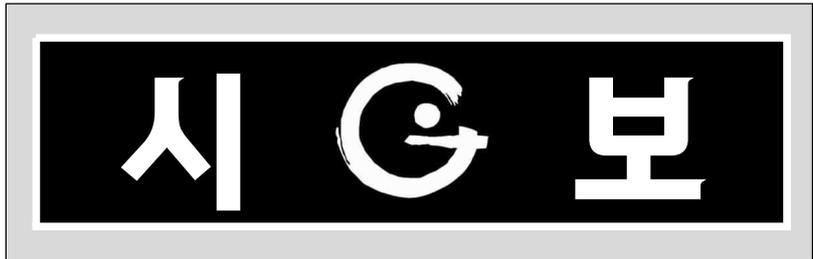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b>선 람</b>	<b>기관의 장</b>



## 제15호 2024. 4. 11.(목)

###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4-114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	1
광양시 고시 제2024-115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	3
광양시 고시 제2024-1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5

###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4-906호	도로지정(변경)공고 .....	6
광양시 공고 제2024-946호	도로지정공고 .....	8
광양시 공고 제2024-967호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	10
광양시 공고 제2024-968호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
광양시 공고 제2024-971호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7
광양시 공고 제2024-972호	도로지정(변경)공고 .....	62

<b>회 람</b>										
----------------	--	--	--	--	--	--	--	--	--	--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1.

### 광 양 시 장

####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용무정길 84 외5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4. 11.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6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091-2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용무정길 84	20240411	20100414	지형지물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494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장동길 75-63	20240411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780-9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당저길 11-3	20240411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1-13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옥진평길 82-17	20240411	20210520	옥진뜰에서 인용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915-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3길 13-10	20240411	20090623	행정리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196-1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5길 22 (마동)	20240411	20111229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2024. 4. 11.(목)
2. 고시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연장(붙임조서 참조) 1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http://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2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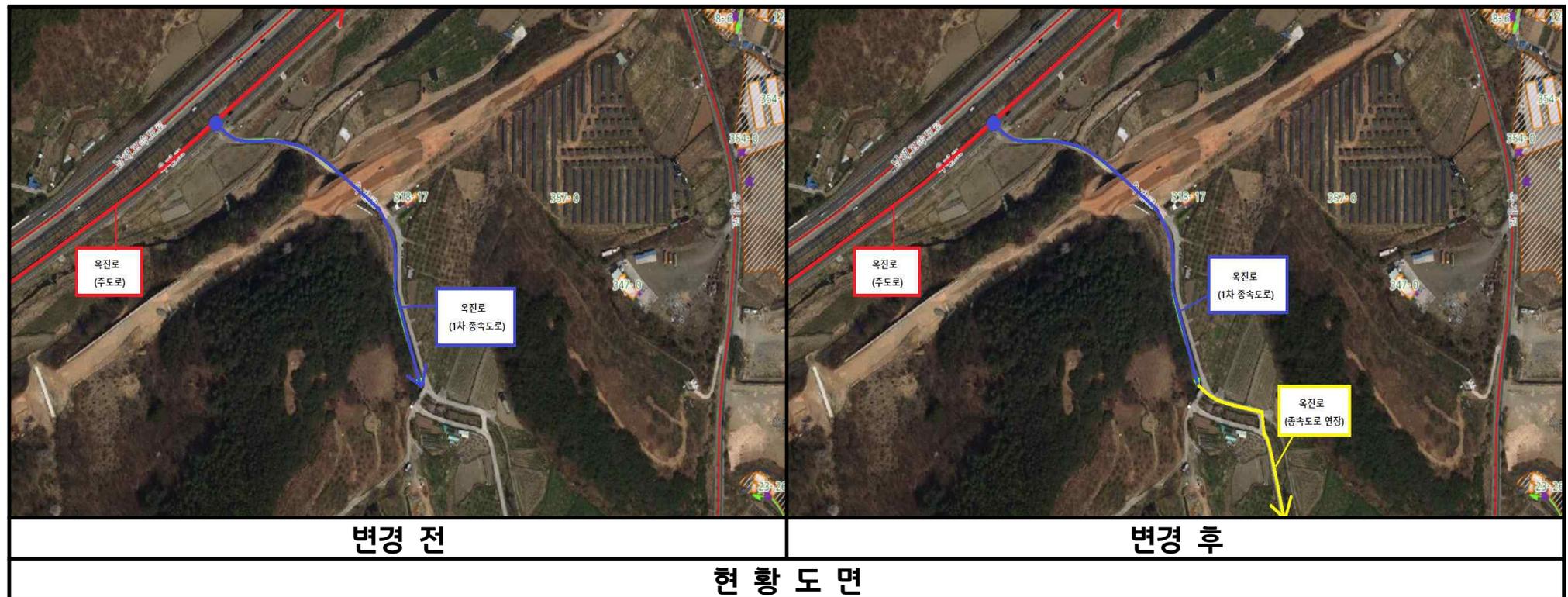
붙임: 도로구간 연장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 ▣ 도로구간 변경(연장) 조서

연번	도로명	시점	종점	기초번호	길이 (m)	도로 위계	폭 (m)	기초간격 (m)	중심선	도로구간 변경사유	관할 구역	
1	변경전	옥진로 (1차종속)	선유리 144-1	선유리 866	318-1 ~ 318-30	300	로	3	20	도면참조	도로구간 연장	옥곡면
	변경후		선유리 144-1	선유리 124-6	318-31 ~ 318-48	462	로	3	20	도면참조		

## ▣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 광 양 시 장

###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섬진강
점용자	주소	광양시 옥곡면 대치로 144번지
	성명	마을키움네트워크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660-5번지
	면적	1,231㎡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프리마켓
점용기간		2024. 4. 13.~2024. 4. 13.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 로 지 정(변경) 공 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공고 합니다.

2024. 4. 17.

##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변경)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1.(15일간)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도로위치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마동 7-41 외 1필지	광양시 마동 7-15, 7-16, 7-18, 7-22, 7-24번지	100m	7m	696㎡	유한회사광양OOOOOO	동의
					강 ○ 순	동의
					문 ○ 석	동의
					강 ○ 주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 061-797-3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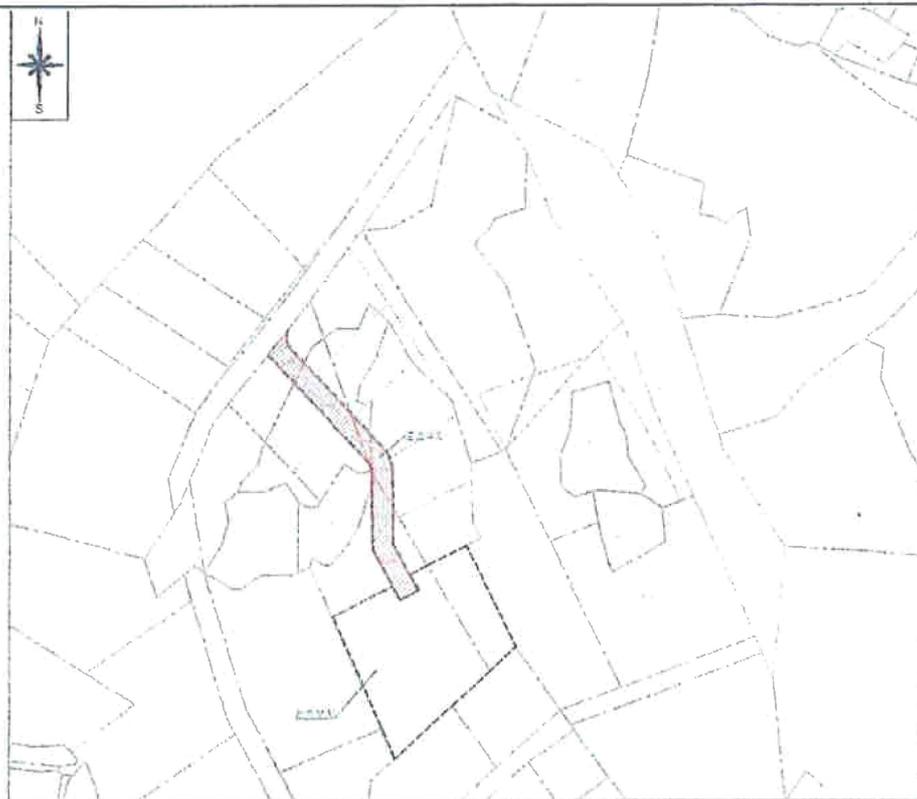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 1/600, [  ] 1/1,200



#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 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4. 4. 8.

## 광양시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21.(14일간)
4. 도로지정 공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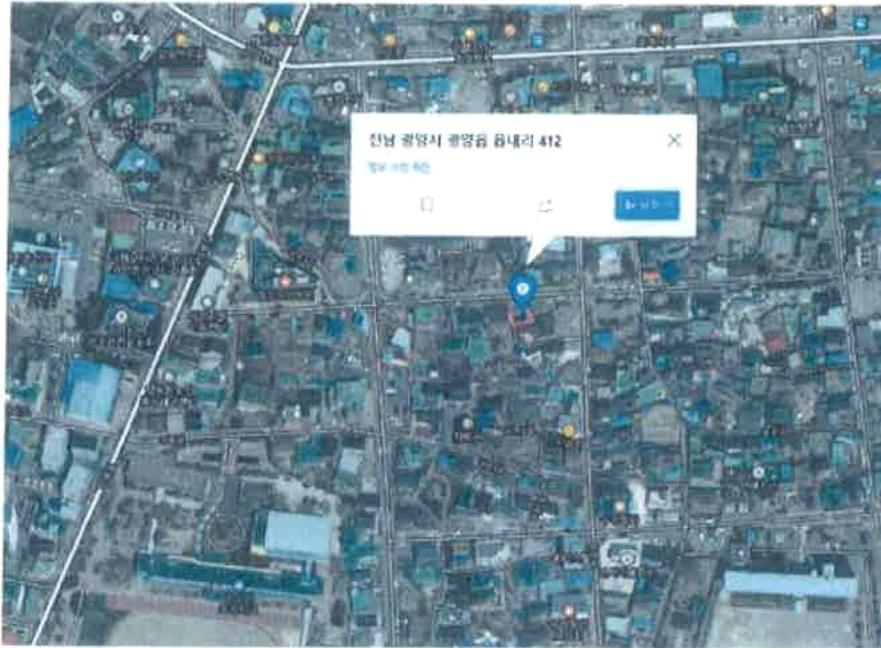
건축위치	도로위치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412번지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412번지	12.93m	4m	9㎡	황○호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 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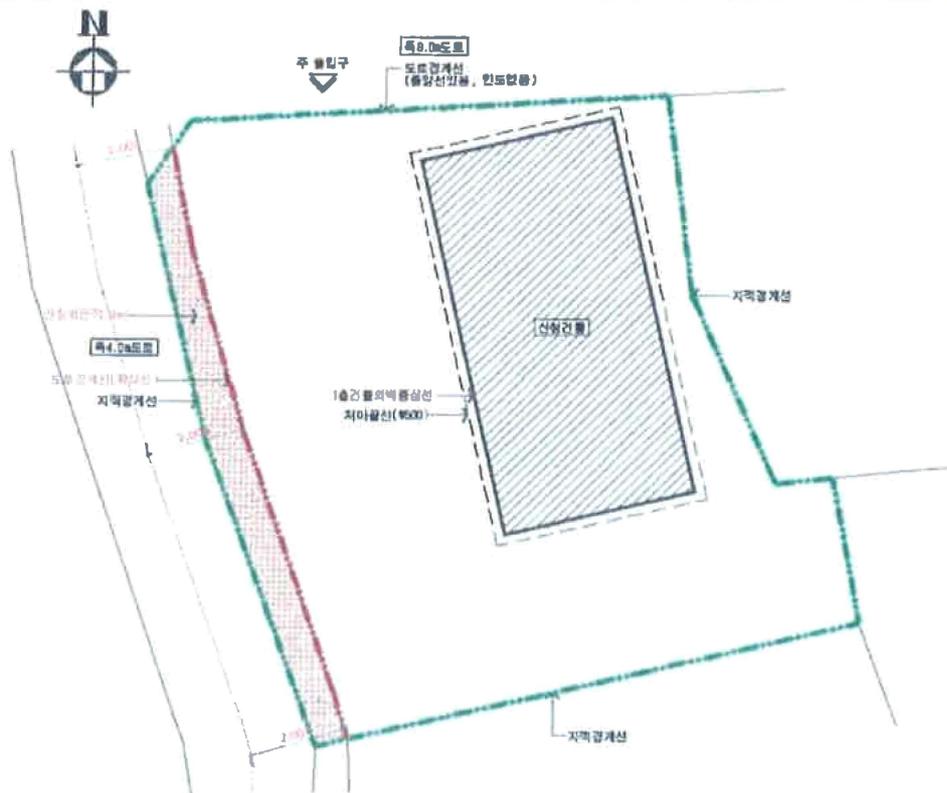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 1/600, [ ] 1/1,200



#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09일

## 광 양 시 장

1. 규정명 :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2. 폐지 취지
  -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광양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은 폐지함.
3. 주요내용
  -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 폐지



####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4. 09. ~ 4. 29.(20일)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 5. 의견 제출

-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청년일자리과장, 전화: 061-797-1990, FAX: 061-797-4192, E-mail: ckwnst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폐지규정안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정명 :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  
차법」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4월 09일

## 광 양 시 장

1. 규칙명 :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현행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 제1조(목적)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2조(인구영향검토제 시행) 신설

-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한 인구영향검토제 시행을 위하여 신설
- 현행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의 검토사항 및 추진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은 폐지함
- 종전「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별표2]인구영향검토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정함

○ 제3조 (전입지원시책 신청 등)

- 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배우자 지원은 읍·면·동장에게 신청(별지 제2호서식)
-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입지원시책을 신청하기 때문에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청기한 삭제
-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은 시장에게 신청(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으로 지원자 및 지원내용 기록 관리

○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4. 09. ~ 4. 29.(20일)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 5. 전부개정 규칙안 : 별첨

## 6. 의견 제출

○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청년일자리과장, 전화: 061-797-1990, FAX: 061-797-4192, E-mail: ckwnst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3. 현행 시행규칙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영향검토제 시행)** ①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영향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구증감에 미칠 영향
2. 결혼·출산, 육아·보육, 교육환경, 일자리, 주거(주택), 문화·관광 등에 미칠 영향
3. 특정 성별 및 인구구조(계층)에 미칠 영향
4. 실행전략 및 성과측정 지표 설정 등

② 인구영향검토제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입지원시책 신청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입지원시책 지원 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전입세대, 전입학생 및 전입배우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2.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② 시장과 읍·면·동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영향검토제 추진절차(제2조 관련)**

① 인구영향 사전검토서  
작성 및 검토 요청  
(사업부서)

- 정책 등의 수립 및 실행 시 인구영향 검토 대상 여부 결정
- 인구영향 사전 검토서 작성하여 인구영향검토 요청



② 인구영향 사후검토서  
작성 및 회신  
(인구영향검토제 운영부서)

- 전문가 자문 추진
- 인구영향 사후 검토서 작성하여 회신



③ 검토의견 반영·추진  
및 결과 통보  
(사업부서)

- 인구영향검토의견 반영(수용·불수용) 검토
- 수용 시 정책 등 수정하여 시행
- 인구영향검토의견 반영 결과 통보



④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결과 보고  
(인구영향검토제 운영부서)

-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결과 보고



## 인 구 영 향 검 토 서 (사전)

사업부서 :                    과(                    팀)	담당자 :                    (                    )
----------------------------------------------------	-------------------------------------------------

사전 검토 (사업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1. 인구증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있음 [    ]</span> <span>없음 [    ]</span> </div>						
2. 계층영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중장년[    ]    노인[    ]    전체[    ]</span> </div>						
3. 사업분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결혼·출산[    ]    육아·보육[    ]    교육환경[    ]</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일 자 리[    ]    주거(주택)[    ]    문화·관광[    ]</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의료    [    ]    교통    [    ]    기타    [    ]</span> </div>						
4. 지원방식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span>직접지원(현물,현금) [    ]</span> <span>간접지원(교육 인식개선) [    ]</span> <span>기타 행정 [    ]</span> </div>						
5. 사업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총평</td> <td></td> </tr> <tr> <td>긍정적 측면</td> <td></td> </tr> <tr> <td>부정적 측면</td> <td></td> </tr> </table>	총평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총평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6. 실행전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인구증가율 제고 방안</td> <td></td> </tr> <tr> <td>애로사항 및 문제점</td> <td></td> </tr> </table>	인구증가율 제고 방안		애로사항 및 문제점			
인구증가율 제고 방안							
애로사항 및 문제점							
7. 성과지표	<p style="text-align: center;">&lt;인구 유입·유지 성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gt;</p>						



# 인 구 영 향 검 토 서 (사후)

사업부서 :                    과(                    팀)	담당자 :                    (                    )
----------------------------------------------------	-------------------------------------------------

사후 검토 (인구영향검토제 운영부서)	
검토사항	검 토 의 견
사 업 명	
1. 인구증감	
2. 계층영향	
3. 사업분야	
4. 지원방식	
5. 사업평가	
6. 실행전략	
7. 성과지표	
8. 종합평가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전입하는 세대(자)에 대하여 “광양시 전입 시책 지원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광양시 전입일자, 전입세대원 수, 재학학교 및 학년, 배우자성명,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개인정보는 “광양시 전입시책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광양시 전입시책 지원 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입가족현황, 거주기간 등) 활용
-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이용기관의 명칭 : 광양시(읍면동)
  - 이용사무(이용목적) : 현주소,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배우자 등 전산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 시까지
-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발급자) : \_\_\_\_\_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자료로 반영구 보유합니다.

###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전입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전입하는 세대(자)에 대하여 “광양시 전입시책 지원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관(기업)명, 기관(기업) 주소, 연락처,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신청인 직책 및 성명 등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현주소, 전주소, 전입일,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개인정보는 “광양시 전입시책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광양시 전입시책 지원 시 필요정보(성명, 전주소, 현주소, 거주기간, 전입일 등) 활용
-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이용기관의 명칭 : 광양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전주소, 현주소, 거주기간, 전입일 등 전산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 시까지
-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발급자) : \_\_\_\_\_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개인정보는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자료로 반영구 보유합니다.

###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광양시 전입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 전입지원시책 지원 관리대장 (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배우자)

연번	신청일	지원 시책	지 원 대 상 자					신 청 자		지원내용		수령인	결 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원 수	전입일	성명	생년월일	상품권 (만원)	종량제 봉투(매)		담당자	팀장	읍면동장





###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전입세대 지원, 전입학생 지원, 전입 배우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2.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포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②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자 관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거주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광양시 관내 거주기간, 전입가족 현황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입가족현황, 거주기간 등) 활용
-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4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광양시 관내 거주기간, 전입가족 현황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입가족현황, 거주기간 등) 활용
-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4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일

##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상징물의 통합 관리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3. **주요 내용**
  - 상징물 통합 관리로 제명 변경
  - 조례의 목적 및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 명확화(안 제1조~제5조)
  - 상징물의 제·개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상징물 관련 사업 및 사용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반시 조치사항(안 제13조~제15조)



####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4. 11. ~ 5. 1.(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 5. 전부개정조례안: 별첨

####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기획예산실, 전화: 061-797-2384, FAX: 061-797-2574, E-mail: eun20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랜드: 별표 1
2. 슬로건: 별표 2
3. 비전: 별표 3
4. 심벌마크(시기, 문장 포함): 별표 4
5. 마스코트: 별표 5
6. 매돌이 캐릭터: 별표 6
7. 전용서체: 별표 7
8. 시민의 노래: 별표 8
9. 꽃(동백), 새(갈매기), 나무(고로쇠): 별표 9

**제4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② 시 및 시 산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각급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도 게양할 수 있다.

**제5조(문장의 사용 등)** ① 별표 4의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로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상징물의 개발, 변경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공모 선정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상징물별 매뉴얼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

③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부서를 지정·운영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제4호의 심벌마크, 제5호 및 제7호: 기획예산실
2. 제3조제6호: 홍보소통실
3. 제3조제4호의 시기, 문장(휘장, 철인): 총무과
4. 제3조제8호 및 제9호: 문화예술과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 범위·취소)**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및 가공식품 등 공산품류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견본 등 제출요구)** 시장은 필요하면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생산제품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 면제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3. 공공기관 또는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시기 및 문장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및 「광양시화·시조·시목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 브랜드 (제3조제1호 관련)

## □ 브랜드



워드마크 최소크기



## □ 의미



-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어 살기 좋고 생기 넘치는 도시의 이미지 표현
- 레드 는 태양을
- 옐로우 는 희망을
- 블루 는 협동·화합을 의미하며
- 그린 은 자연을 상징



# 슬 로 건 (제3조제2호 관련)

## □ 슬로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 □ 의미

-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시대를 만들고,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광양시)를 만들겠다는 의지 표현

# 비 전 (제3조제3호 관련)

## □ 비전

(기본형)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가로형)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 □ 의미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추구로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 보다 가치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도시 실현



# 심벌마크 (제3조제4호 관련)

## □ 휘장(심벌마크)



# 광 양 시



- 태양을 상징화하는 것으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 힘의 상징인 백운산의 능선과 컨투부의 크레인
- 우리나라 5대 강(江) 중 가장 깨끗하고 힘찬 섬진강과 광양만을 상징화시켜 광양만을 상징화시켜 광양인의 협동과 화합을 역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21C를 향해 비상하는 광양시를 모티브

## □ 의미

- 광양시는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역사적으로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 있는 곳' 이라는 '희양' 명도 '빛광' 광 '별양' 의 합성어로 태양과 연관이 깊다.
- 전체적으로 광양만에 있는 컨투부의 크레인 위로 떠오른 태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세련성과 미래 첨단성을 가미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광양시를 이미지화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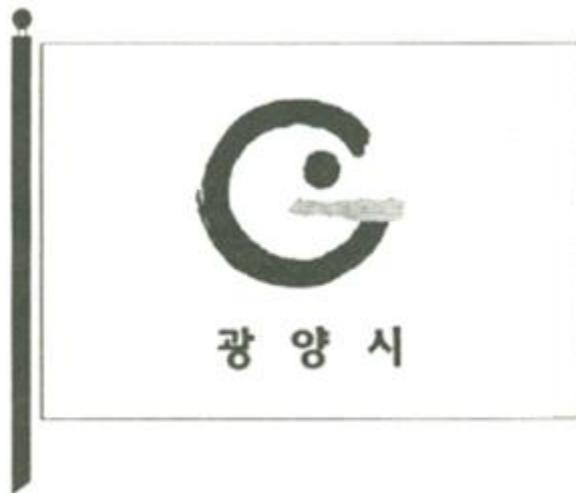


## □ 시기 모양

◇ 정기: 우단에 금수술 부착



◇ 약기(게양기)



## □ 규격

- 시기의 규격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준한다.



## □ 문장 모양 및 규격



- 문장의 표준규격은 가로 20cm, 세로 20cm로 한다.  
단, 가로와 세로는 1:1의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마스코트 (제3조제5호 관련)

## □ 마스코트

※ 미래소년 - 해아  
(MIRAESONEON HAE-A)

(응용형)

(기본형)



MIRAESONEON HAE-A



MIRAESONEON HAE-A



MIRAESONEON HAE-A



MIRAESONEON HAE-A



MIRAESONEON HAE-A

## □ 의미

- 미래소년 해아(어린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광양시 마스코트는 꿈과 광양만에 돋는 해를 의인화 한 것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따스함'을 안겨주는 전령으로서  
미래의 무한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광양시 이미지와 잘 어울립니다.



# 매돌이 캐릭터 (제3조제6호 관련)

## □ 매돌이 캐릭터

(기본형)



(응용형)



(응용형)



## □ 의미

- 광양시 캐릭터 매돌이는 지역 농특산품인 매실을 개구쟁이 소년으로 의인화하여 개발하였고, 매실의 ‘매’와 귀여운 남자아이 이름 ‘돌이’를 합하여 ‘매돌이’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매돌이는 2010년 출생으로 영원한 10살인 창의적인 개구쟁이이면서 예의 바른 모습이 뚝망뚝망한 청매실 바로 그 자체입니다. 매돌이는 끼도 많아 “오롯이광양” 유튜브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 전용서체 (제3조제7호 관련)

## □ 광양감동체

광양시  
ABCD  
12345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광양시  
ABCDEFGHIJKLMNPO  
QRSTUVWXYZ  
0123456789  
!"#\$%&'()\*,-./:;?@[\\]^\_`{|}~

가나다 ABC abc ascender 어센더  
descender 디센더

고정폭

지속가능한 글로벌 띄어쓰기 간격

시각중심선

미래도시 광양

## □ 디자인 콘셉트

- 광양시의 비전과 도시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을 가진 광양의 도시 이미지를 글자 획에 표현



□ 광양햇살체 Bold

광양시  
ABCD  
12345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광양시  
ABCDEFGHIJKLMN  
OPQRSTUVWXYZ  
0123456789  
!"#\$%&'()\*,-./:;?@[\\]^\_`{|}~

가나다 ABC abc ascender 어센더  
descender 디센더

고정폭

지속가능한 글로벌 띄어쓰기 간격  
920 920 920 920 920 240 920 920 920

시각중심선

미래도시 광양



□ 광양햇살체 regular

광양시

ABCD

12345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광양시

ABCDEFGHIJKLMNOP

QRSTUVWXYZ

0123456789

!"#\$%&'()\*,-./:;?@[\\]^\_`{|}~

가나다 ABC abc ascender 어센더  
descender 디센더

고정폭

지속가능한 글로벌 띄어쓰기 간격

920	920	920	920	920	240	920	920	920
-----	-----	-----	-----	-----	-----	-----	-----	-----

시각중심선

미래도시 광양



# 광양 시민의 노래 (제3조제8호 관련)

## 광양 시민의 노래

이지수 작곡  
서동엽, 이승민 작사

**A** 험차고 팔기차계 (♩ = c.132)

D A/C# Bm F#A

백운산 정기속\_에 샘 솟는\_기 상\_  
섬진강 줄기따\_라 뿔 쳐진\_인 정\_

5 G D/F# Em7 A

슬기 와 지혜 모\_아 가 꺾은\_터 전\_  
참되고 복된 문\_화 꽃 피운\_터 전\_

9 D A/C# Bm F#A

내 고향 찬란하\_게 빛나는\_광 양\_  
떠오른 태양 처\_럼 눈부신\_광 양\_

13 G B7 E Asus4 A

모두가 꿈꾸는\_ 세상\_으 로\_ 외 치  
미래가 활기찬\_ 세상\_으 로\_

**B**

G A D A/C# Bm

자\_드높이\_ 광양 의\_ 미래\_위 해\_ 뿔 치

22 G D A

자\_세 계 로\_ 우리\_ 광 양\_ 모두



26 G D A F#A# Bm  
 가 — 희망 잔 — 행복 한 — 난 음 — 위 해 — 오!

30 1. Em A Dsus4 D  
 광 양 의 — 꿈 세 계 들 — 향 래 —

34 2. Em A Dsus4 D  
 광 양 의 — 꿈 세 계 들 — 향 래 —



# 꽃, 새, 나무 (제3조제9호 관련)

## □ 시화(市花), 시목(市木), 시조(市鳥)



동백꽃 시의 꽃(花)

-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긍지와 자랑을 지니고 곱게 피어나는 꽃으로 불굴의 의지와 뜨거운 향토애를 상징



갈매기 시의 새(鳥)

- 향토적이고 고결하며 친근감을 주는 새로 협동심과 개척정신이 강해 끈기와 진취성을 상징하며 노는 모습이 항만 도시를 의미



고로쇠 시의 나무(木)

- 광양의 상징인 백운산에 자생, 이른 봄 수액 이동으로 부지런함과 건강, 소득 증대를 표시









## 도 로 지 정(변경) 공 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공고 합니다.

2024. 4. 17.

##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변경)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1.(15일간)
4. 도로지정 공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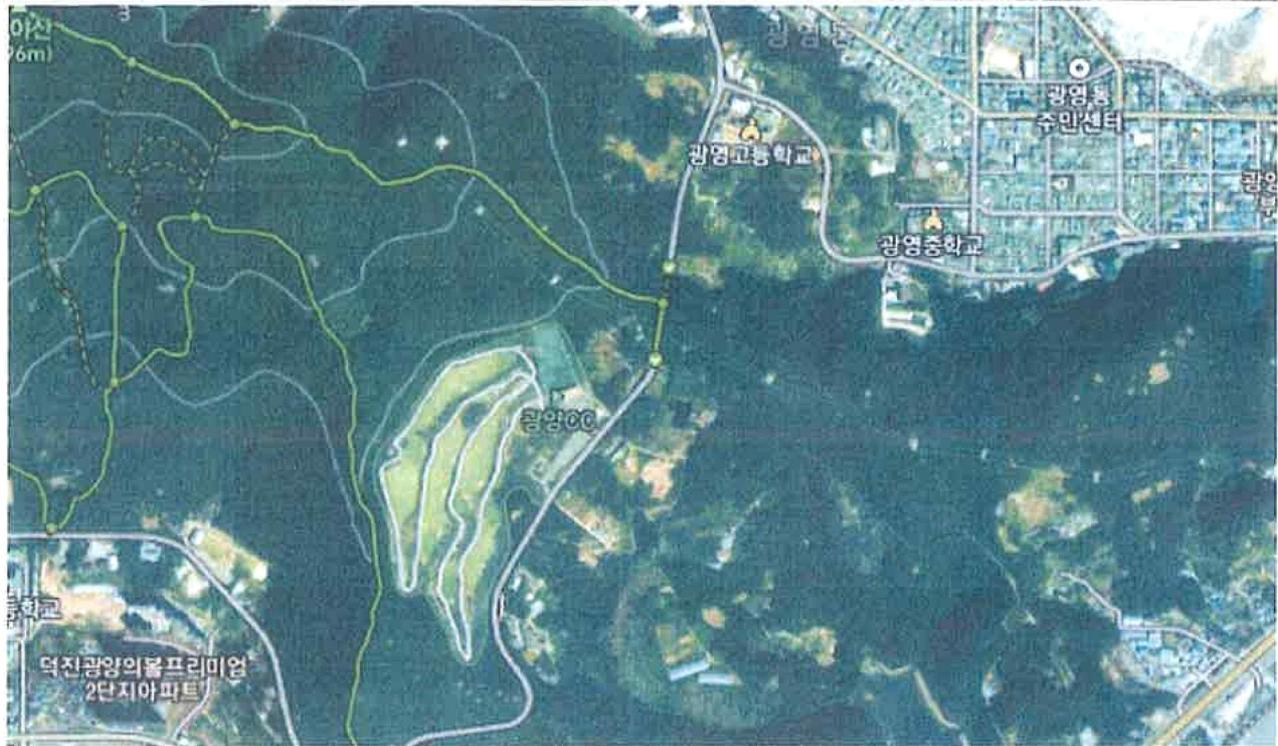
건축위치	도로위치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마동 273-38번 지	광양시 마동 273-37, 273-47, 273-58 번지	140m	6m	837㎡	오○일, 박○용, 채○미, 박○성, 김○중, 박○미, 강○순, 백○순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3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임의>

